

대전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19가단115119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윤현진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굿월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나상혁

5. E

피고 3, 5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민, 김동한

변론 종결 2020. 4. 14.

판결 선고 2020. 5. 26.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716,797원 및 그 중 146,712,449원에 대하여 2019. 2. 26.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6. 19.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8. 8.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C은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8. 8. 22. 접수 제174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1)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2018. 9.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D은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8. 9. 17. 접수 제190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1) 피고 B와 피고 E 사이에 2018. 10.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E은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8. 10. 4. 접수 제1992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2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금액 91,200,000,000원, 보증기간 2016. 2. 24.까지(그 후 2019. 2. 22.까지로 연장)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11. 피고 회사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금액 64,000,000원, 보증기간 2018. 5. 10.까지(그 후 2019. 5. 10.까지로 연장)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 및 제2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B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8. 21. 피고 C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8. 8. 22. 접수 제17469호)를 마쳐주었고, 2018. 9. 17. 피고 D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8. 9. 17. 접수 제19054)를 마쳐주었으며, 3 2018. 10. 2. 피고 E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4. 피고 E에게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8. 10. 4. 접수 제19921호)를 마쳐주었다(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9. 2. 26. 기업은행에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 및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합계 146,712,449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제1신용보증약정에 관한 미수위약금은 13,800원, 대지급금은 1,990,548원, 지연손해금율은 2019. 2. 26.부터 2019. 3. 31.까지 연 10%, 2019. 4. 1.부터 연 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 대위변제금 및 미수위약금, 대지급금 합계 148,716,797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46,712,44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2. 26.부터 2019. 3. 3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9. 6. 1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고 4개월 내지 6개월후인 2019. 2. 26.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회사는 2018. 9. 5.경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그 후 5개월여 후인 2019. 2. 26. 원고가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계약 무렵인 2018. 8. 21. 기준 피고 B의 재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적극재산		
	내용	금액(원)	비고
1	충남 태안군 F 임야 9,912㎡	584,808,000	갑 9호증
2	충남 태안군 G 임야 9,823㎡	658,141,000	갑 9호증
3	대전 유성구 H 전 112㎡	24,113,600	갑 10호증
합계		1,267,062,600	
	소극재산		
	내용	금액(원)	비고
1	I조합	692,645,660	금융거래정보회신
2	대전 유성구	20,150	금융거래정보회신
3	기업은행	2,481,856,727	금융거래정보회신
합계		3,174,522,527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합계		-1,907,459,937 (= 적극재산 1,267,062,600 - 소극재산 3,174,522,527)	

피고 B은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8. 8. 21.부터 2018. 10. 2.까지 사이에 피고 C, D, E과 사이에 순차적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소유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특정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이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C, D, E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 C, D,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 E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 등을 융통해주는 등 금전거래를 해오던 중 각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이므로, 자신들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다룬다.

피고 D은, 피고 B이 J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2억원을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인·허가 비용 및 공사비용을 지출한 K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도 이를 미루다가 결국 위 약정금 중 1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 B과 K 사이에 위 1억원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K의 사촌동생인 피고 D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이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다룬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4846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 E, D이 각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들은 피고 B으로부터 대여금 또는 약정금 등을 변제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위 피고들로서는 피고 B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B의 재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하여 위 대여금 또는 약정금의 회수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식하고 이에 관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항변은 모두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 D, E은 피고 B에게 주문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오명희